

## 2023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경찰학(해설)

### 【2023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경찰학 정답표】

문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답	④	②	④	②	①	③	②	④	④	①	④	①	①	①	③	①	①	③	②	④
문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정답	①	③	①	①	④	①	④	④	③	②	①	①	②	②	④	②	①	③	③	③

#### ■ 분야별 출제 구분 ■

구분	문항 수	문항 번호
경찰학의 기초이론	11문	01, 02,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한국·외국경찰사	1문	13
경찰행정법 (조직·공무원·작용·구제)	15문	0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경찰행정학	6문	28, 29, 30, 31, 32, 33
분야별 경찰활동	7문	34, 35, 36, 37, 38, 39, 40
구별기준	서진호 경찰학 기본서 편재에 따름(강사별 상이할 수 있음)	

#### ■ 전체 총평 ■

- ① 경찰학의 경우 80점 이상이면 충분히 합격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② 난이도를 구분하면 ㉠ “상”은 11번, 12번, 17번, 22번, 38번, 40번이다. ㉡ 기타 문제는 대부분 “중” 또는 “하”로 구분된다.
- ③ 난이도 “상”에 해당하더라도, 충분히 소거법을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들로 판단된다.

#### ■ 대표적인 특징 ■

- ① 문제의 주제는 충분히 출제될 만한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 ② 다만,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범죄론 파트에서 3문제나 출제되었고, 그 문제도 제법 난이도가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이다.
- ③ 소위, 일반행정법 문제는 1문제(17번)만 출제되었다. 결코 일반행정법 공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거법으로도 충분히 풀이가 가능하다.
- ④ 경찰행정법의 경우 단순한 이론과 조문을 물어보는 문제도 많았으나,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도 그 출제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예 : 경찰관 직무집행법). 향후 판례 공부에 집중이 필요하다.
- ⑤ 경찰행정학과 분야별 경찰활동의 경우 크게 어렵지 않았다. 넓고 얇게 기출문제 정도로만 공부해도 충분하다(다만, 향후 외국인 관련 범죄 수사는 반드시 주목하자).

#### ■ 향후 공부방법론 ■

- ① 일반행정법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
- ② 경찰학의 기초이론, 경찰행정법은 넓고 깊게 공부가 필요하다. 특히, 향후 판례를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판례특강 및 다양한 모의고사).
- ③ 경찰행정학 및 분야별 경찰활동은 지엽적인 공부보다 기출위주의 공부가 필요하다.

**【문제 01】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中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역사적·제도적으로 발전해 온 개념”으로서, 경찰작용의 성질과는 관계없이 실정법상(「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경찰의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무상 확립된 개념”으로서 생활안전, 수사, 경비, 교통, 공공안녕정보, 안보수사(보안), 외사 등이 해당한다. 권력적 활동은 물론 비권력적 활동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에 해당한다.

**【문제 02】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下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외관적 위협』이란 경찰이 어떠한 상황을 합리적으로 사려 깊게 판단하여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여 개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의 경찰개입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여겨지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예 : 심야에 순찰중인 경찰관이 사람을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남의 집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귀가 어두운 사람이 TV를 크게 켜놓아 그 소리가 밖으로까지 들린 경우). 그러나 경찰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공공필요에 의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면 “손실보상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 03】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中

**【해설】**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 ②,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① (×)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3조 후단에 따라 시·도에 2개의 시·도경찰청을 두는 경우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② (×)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③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문제 04】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中

**【해설】** ②는 옳은 설명이며, ①, ③,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① (×) “니더호퍼(Neither offer)”에 의하면, 『냉소주의』란 기존의 사회에 대한 자신의 신념체계가 붕괴된 경우 “새로운 것에 의해 대체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아노미 현상을 의미한다.

③ (×) 냉소주의는 대개 도덕적 의심에 근거한 불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정치일반, 경찰제도 전반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서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없다.

④ (×) 경찰문화의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 의사결정과정의 참여를 통한 의견청취, ㉡ 상사와 부하의 신뢰회복, ㉢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민주적 관리), ㉣ 하의상달의 의사전달방법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문제 05】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上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① (×) 셔먼(Sherman)에 의하면,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사소한 호의일지라도 습관화될 경우에는,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연결된다는 가설이다. 실제로 부패는 아주 사소한 행위로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큰 부패로 이어지며, 작은 호의의 수용은 경사로 위에 행위자를 올려놓은 것과 같이 점점 깊이 빠져 들게 함으로써, 나중에는 그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부패하게 된다. 다만,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의 핵심은 작은 호의의 수용이 점점 더 큰 부패로 연결된다는 것이지, 작은 호의의 수용이 경찰관의 “선한 후속행위로 연결”되는 것과는 일맥상통하지 않는다.

**【참고】** 하이덴하이머(A. J. Heidenheimer)의 부패의 정의

- ① 관직중심적 정의 : 부패는 뇌물수수행위와 특히 결부되어 있지만, 반드시 금전적일 형태일 필요가 없는 사적인 이익에 대한 고려의 결과로 권위를 남용하는 경우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 ② 시장중심적 정의 : 고객들은 잘 알려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원하는 이익을 받을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뇌물)을 지불하는 결과이다.
- ③ 공익중심적 정의 : 관직을 가진 사람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금전적인 또는 다른 형태의 보수에 의하여 그러한 보수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중의 이익에 손해를 가져올 때 부패가 발생한다.

**【문제 06】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일반시민의 신뢰』(공공의 신뢰)란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치안을 경찰에게 믿고 맡겼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찰이 이러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내용으로는 ㉠ 법집행의 확실성, ㉡ 적법절차와 비례원칙의 준수, ㉢ 경찰의 사익추구 금지 등이 있다. 보기의 내용은 경찰윤리표준 중 『협력』을 위반한 사례에 해당된다.

**【문제 07】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中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금액의 100분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甲총경은 시간당 30만원의 사례금을 약속받은 점, 강의를 3시간을 하였으므로, 1회당 총 4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월 1회 총 3개월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월 1회차당 최대지급금액인 45만원에 3개월을 곱하면 최대사례금의 액수는 135만원이다.

**【문제 08】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下

**【해설】**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 ②, ③은 틀린 설명이다.

- ① (×)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으로 한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5조 제3항).
- ② (×)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7조 제1항). 위촉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고,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7조 제2항).
- ③ (×) 정기회의는 “**경찰청은 월 1회**”, “**시·도경찰청은 분기 1회**” 개최한다(「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11조 제2항).

**【문제 09】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中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누구든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3항에 따른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동 규정 제18조의3 제1항).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동 규정 제18조의3 제3항).

**【문제 10】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下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① (×) 경찰의 역할을 범죄해결(법집행자, 범죄해결자)에 초점을 두고, 범인검거율이라는 사후통제에 집중하는 것은 『전통적인 경찰활동』의 내용이다.

**【참고】 전통적인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

구 분	전통적인 경찰활동	지역사회 경찰활동
주 체	경찰이 법집행의 책임을 지는 유일한 정부기관임	경찰과 시민 모두에게 범죄방지의 의무가 있음
경찰의 역할	범죄해결(법집행자, 범죄해결자)	문제해결(서비스제공, 문제해결자)
업무평가 방식	범인 검거율(사후통제)	범죄 및 무질서의 감소율(사전통제)
업무의 우선순위	범죄와 폭력의 퇴치	범죄와 폭력의 퇴치 + 주민 문제해결
효율성의 측정	범죄 신고에 대한 반응시간	주민의 경찰업무에의 협조의 정도
조직구조	집권화	분권화
타 기관과의 관계	권한과 책임 문제로 인한 갈등구조	공동목적 수행을 위한 협동·상생구조
강조사항	① 법과 규범에 의한 규제 ② 법의 엄격한 준수	분권화된 경찰관 개개인의 능력 강조

**【문제 11】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上

**【해설】** (가)는 ㉞의 발달적 범죄예방, (나)는 ㉟의 상황적 범죄예방, (다)는 ㉠의 법집행을 통한 범죄 억제에 해당한다.

㉟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은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과 어려움을 높여 범죄기회를 줄이고, 범죄행위의 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범죄를 억제·예방하려는 활동이다.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공식적 순찰활동의 강화와 아파트 입구 현관문의 반사경 부착 등의 노력은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성과 어려움을 높이게 하고, 이는 결과론적으로 범죄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 『**지역사회 기반 범죄예방**』은 지역 경찰관은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재량권을 부여받고 스스로 지역 주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임무의 목적을 스스로 설정하고 달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권화를 통해 경찰은 유연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치안 요구에 빠르게 답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 범죄예방』에 관한 내용은 <보기 1>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㉞ 『**발달적 범죄예방 전략**』은 위험요인을 줄이고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범죄 경로들로 이어지는 다양한 요인들을 미치 차단하고 범죄실행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발달적 범죄예방 전략은 개인, 학교, 가족으로 그 주체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가)의 경우에는 학교와 가족에서의 발달적 범죄예방 전략과 관련이 깊다.

㉠ 『**법집행을 통한 범죄억제**』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사소한 무질서행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한 대응을 강조하는 무관용의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참고】** 톤리와 패링턴(Tonry & Farrington)의 구분에 따른 청소년 비행의 요인

톤리(Tonry)와 패링턴(D. Farrington)에 의하면 청소년 비행의 요인은 다음과 같다.

- ① 개인적 요인(낮은 자아존중감, 충동적 성향, 아동기 학대 및 상처 경험)
- ② 가족 요인(불안정한 가족 구조, 낮은 가계 소득, 강압적 양육 태도, 부모의 방임)
- ③ 또래 및 학교 요인(비행 친구와 사귀, 학교폭력의 경험)
- ④ 사회·환경요인(비행환경, 부정적인 SNS 환경 노출, 긍정적 모델링의 결핍)

**【문제 12】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中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① (×) 『**조사단계**』는 문제라고 여겨지는 개인과 관련되는 사건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문제들을 조사하는 과정으로 문제의 범주를 넓히는 단계에 해당한다. 일회적으로 발생하지만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심각한 중대범죄 사건을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문제의 근원적 원인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 우선을 둔다.

**【문제 13】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中

**【해설】** ㉠은 2000년, ㉡은 1998년, ㉢은 2021년, ㉣은 1991년, ㉤은 2006년이다. 따라서 과거에서부터 현재 순서로 정리하면 ㉤ → ㉡ → ㉠ → ㉣ → ㉢의 순이다.

**【문제 14】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上

**【해설】** ①은 옳은 설명이며, ②, ③,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② (×)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행정기본법」 제13조). 즉, 「행정기본법」 제13조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③ (×)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사업자의 주택사업계획은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임에 반하여,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토지 가액은 그 100분의 상당의 금액에 불과한 데다가, 사업자가 그 동안 그 부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착오로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조요청서를 보내자 그 때 서야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온 사정이 비추어 볼 때 부관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④ (×)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 甲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甲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면, 甲이 각 운전면허로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점, 甲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甲에 대하여 특별히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甲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위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운전면허를 취소한 부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문제 15】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下

**【해설】**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①, ②,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① (×) 행정예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7조의2).

② (×) 행정작용은 그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0조 제3호).

④ (×)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

**【참고】 행정의 법원칙 - 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동법 제10조).

- ① 행정목적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적합성의 원칙)
- ② 행정목적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필요성의 원칙 = 최소침해의 원칙)
- ③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상당성의 원칙 = 협의의 비례원칙)

**【문제 16】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中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① (×)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동 규정 제2조 제1호). 보기의 내용은 『위탁』에 관한 설명이다.

**【문제 17】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上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①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징수의 요건은 「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변상금 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문제 18】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참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자격 및 결격사유(외부임용의 경우에 한함)**

구 분	내 용
임용자격	①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할 경력이 있는 사람 ②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③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력 기간의 합산이 15년 이상”인 사람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그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제6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제6항 제2호의 판사·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제6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문제 19】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下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참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와 「경찰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의 비교**

- ① 복수국적을 지닌 사람은 일반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나, 경찰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없다.
- ② 피한정후견인은 일반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나, 경찰공무원으로는 임용될 수 없다.
- ③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는 파면처분 후 5년, 해임처분 후 3년이 경과하면 일반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나, 경찰공무원은 파면·해임처분이 있으면 “기간 경과와 상관없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문제 20】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보기의 규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그 어디에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문제 21】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下

**【해설】** 문제의 내용은 행정행위의 내용 중 『부담』에 대한 설명이다. 『부담』은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행정행위”이고 이는 『하명』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부이므로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쟁송대상으로 할 수 없으나, 독립적인 처분성이 인정되는 “부담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문제 22】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上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문제 23】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下

**【해설】** ①은 옳은 설명이며, ②, ③,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② (×)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6항).

③ (×)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 제2항).

④ (×)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은 경찰의 직무범위로 명시되어 있으나, 테러경보 발령은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3호).

**【문제 24】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上

**【해설】** ①은 옳은 설명이며, ②, ③,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② (×)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

- ①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 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③ (×)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일 때에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④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은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는 경찰행정 영역에서의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표현”한 것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공익목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하는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문제 25】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은 『가명처리』이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의2호).

**【문제 26】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中

**【해설】** ①은 옳은 설명이며, ②, ③,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② (×)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이다(「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③ (×)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④ (×) 보기의 내용은 『**사정재결**』에 대한 설명이다.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1항).

**【문제 27】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下

**【해설】**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행정소송의 종류 중 『**당사자소송**』에 대한 설명이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예 : 공무원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소송 등)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참고】** 당사자소송으로 본 판례

- ①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용 건물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
- ② 전문직 공무원인 공중보건역사의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
- ③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 거부
- ④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징수권한 여부를 다투는 소송
- ⑤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그 조합설립변경 결의 또는 사업시행계획 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
- ⑥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확인을 구하는 소송
- ⑦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 ⑧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 ⑨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지급결정취소에 대해 관련자 및 유족들이 갖게 되는 보상 등에 관한 권리
- ⑩ 명예퇴직한 법관의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청구소송
- ⑪ 지방소방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소송
- ⑫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청구소송
- ⑬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문제 28】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下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무니(J. D. Mooney)는 『조정 및 통합의 원리』에 대해서 “조직의 제1원리”임과 동시에 가장 “최종적인 원리”라고 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문제 29】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下

**【해설】** ③은 동기부여이론 중 과정이론에 해당하며, ①, ②, ④는 동기부여이론 중 내용이론에 해당한다.

**【참고】 동기부여이론의 유형 - 내용이론**

구 분	내 용
내용이론의 의미	① 『내용이론』은 사람을 움직이고 일하게 하는 구체적인 실체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는 이론이다. ② 내용이론은 사람이 동기부여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욕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초점을 둔다.
내용이론의 종류	내용이론의 종류에는 ① 매슬로우의 욕구계층이론, ② 아지리스의 미성숙·성숙이론, ③ 허즈버그의 2요인이론, ④ 맥그리거의 X·Y이론, ⑤ 맥클랜드의 성취동기이론, ⑥ 샤인의 4대 인간관이론 등이 있다.

**【참고】 동기부여이론의 유형 - 과정이론**

구 분	내 용
과정이론의 의미	『과정이론』은 인간의 욕구가 곧바로 인간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고려하여 행동한다는 이론이다.
과정이론의 종류	과정이론의 종류에는 ① 포터와 로러의 업적만족모형, ② 브룸의 기대이론, ③ 아담스의 공정성이론 등이 있다.

**【문제 30】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下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보기의 내용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은 예산의 통제보다는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성과에 초점을 두며, 업무단위에 따른 비용과 업무량을 측정함으로써 정보의 계량화를 통하여 관리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관리지향적” 예산이다.

**【참고】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구 분	내 용
장 점	① 사업계획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② 단위원가의 과학적 계산에 의하여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원배분을 합리화할 수 있다. ③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해당 부서의 업무능률을 측정할 수 있다.
단 점	① 단위원가 계산에 어려움이 있다. ② 품목별 예산제도에 비하여 입법적 통제가 곤란하여 회계책임이 불분명하다. ③ 인건비 같은 고정성 경비에 적용이 어려워 기본경비에 대한 적용이 곤란하다. ④ 업무측정단위의 선정이 어렵다.

**【문제 31】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下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① (×) 『간이무기고』란 경찰기관의 각 기능별 운용부서에서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집중무기고로부터 무기·탄약의 일부를 대여 받아 별도로 보관·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12조 제4호). 보기의 내용은 『집중무기고』에 대한 설명이다.

**【문제 32】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下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① (×)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 및 취급 등에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I급 비밀관리기록부는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암호자재의 경우에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로 관리한다(「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1항).



**【문제 33】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下

**【해설】** ①,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②는 틀린 설명이다.

② (×)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감찰관에 대하여 감찰관 보직 후 “2년마다”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경찰 감찰 규칙」 제8조 제1항).

**【문제 34】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中

**【해설】** ②는 옳은 설명이며, ①, ③,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① (×) “시·도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③ (×) 지역경찰관서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지역경찰관서의 운영에 관하여 총괄 지휘·감독하는 것은 “경찰서장”이다.

구 분	내 용
경찰서장	지역경찰관서의 운영에 관하여 총괄 지휘·감독
경찰서 각 과장 등 부서장	각 부서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지역경찰의 업무에 관하여 경찰서장을 보좌
지역경찰관서장	지역경찰관서의 시설·장비·예산 및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휘·감독
순찰팀장	‘근무시간 중’ 소속 지역경찰을 지휘·감독

④ (×)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 ㉠ “문서의 접수 및 처리”
- ㉡ “시설·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 ㉢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
- ㉣ 기타 행정업무 및 지역경찰관서장이 지시한 업무

**【문제 35】 정답 및 해설**

**【정답】** ④

**【난이도】** 中

**【해설】** ①, ②,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④ (×)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르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의 행위(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2항).

- ㉠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 ㉡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거래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촬영물 및 복제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문제 36】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난이도】** 下

**【해설】** ①, ③, ④는 긴급임시조치에 해당하며, ②는 임시조치에 해당한다.

**【참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문제 37】 정답 및 해설**

**【정답】** ①

**【난이도】** 中

**【해설】** ②, ③,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①은 틀린 설명이다.

① (×) 모든 차의 운전자는 “터널 안”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33조).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32조).

**【문제 38】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上

**【해설】** ③은 옳은 설명이며, ①, ②, ④는 틀린 설명이다.

① (×) 테러로 인하여 생명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6조 제1항).

② (×)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2호).

④ (×)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명예의 피해 ×)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5조 제1항).

**【문제 39】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中

**【해설】** ㉠, ㉡은 옳은 설명이며, ㉢, ㉣은 틀린 설명이다.

㉢ (×)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질서유지인의 자격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의 자격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문제 40】 정답 및 해설**

**【정답】** ③

**【난이도】** 上

**【해설】** ①, ②, ④는 옳은 설명이며, ③은 틀린 설명이다.

③ (×) 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경찰수사규칙」 제92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공무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공무증명서의 사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경찰수사규칙」 제92조 제2항).